

---

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침

---

2025. 6.



농업기술센터  
농식품산업과

# '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침 요약

| 항 목           | 사 업 내 용  |
|---------------|--|
| 목 적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농식품기업의 간편식품* 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 (*신선편의식품, 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간편조리세트)</li> <li>■ 건강을 중시하면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 농산물 활용도 제고</li> </ul> |
| 사 업 개 요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총 사업비 : 14,221천원 (시비 80% 자담 20%)</li> <li>■ 사업량 : 2개소</li> <li>■ 사업비한도 : 개소당 7,111천원 이내(자부담 포함)</li> </ul>  |
| 대 상 자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</li> </ul>  |
| 지원요건 (자격)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</li> <li>■ 운영실적 2년 이상</li> <li>■ 2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</li> </ul>  |
| 지원사업 내용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농산물*을 주원료로 한 간편식품** 제작 및 공급</li> </ul> <p>*지역농산물 활용 우선순위: ①전주산 ②도내산 ③국내산</p> <p>**신선편의식품, 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간편조리세트</p>  |
| 재원비율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비 80%, 자부담 20%</li> </ul>  |
| 대 상 자 선 정 심 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단계 : 서류평가(사업대상자 기본여건 검토)</li> <li>■ 2단계 : 선정 심의 위원회 평가 및 선정</li> </ul>   |
| 기 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, 사후관리,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조례, 지침에 의함</li> <li>■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 제외 작성</li> </ul>   |

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침

## 1. 사업 목적

- 지역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농식품기업의 간편식품 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
- 건강을 중시하면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 농산물 활용도 제고

※ 4대 간편식품 : 신선편의식품, 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간편조리세트

## 2. 추진 근거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21조 및 제50조
- 「전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## 3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6. ~ 12.
- 사업량 : 2개소

○ 총사업비 : 14,221천원(시비 11,377 자담 2,844)

- 재원비율 : 시비 80%, 자담 20%

- 지원한도 : 개소당 7,111천원 이내(자부담 20% 포함)

○ 사업대상 :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

○ 사업내용 : 지역농산물\*을 주원료로 한 간편식품 제작 및 공급

\*지역농산물 활용 우선순위: ①전주산 ②도내산 ③국내산

- 간편식품 개발에 따른 제품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포함  
(기존 포장재 제작 불가)

- 상품화에 따른 간편식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 포함  
(홍보물 제작 등)

○ 유의사항 : 기존 제품에 대한 포장재, 마케팅 비용 등 지원 불가하며, 본 사업으로 상품화되는 간편식품 제작에 따른 비용 지원

## 4. 주요내용

### ○ 지원자격

-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예정인 식품제조가공업소
- 운영기간 2년 이상 농식품기업, 2년간 평균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

### ○ 사업세부내용

- 농산물은 전주산 활용 비중이 높은 기업 우선 지원
- 관내 조달이 어려운 양념류, 계절별 식재료 등은 국내산만 사용가능
- 소스 등 가공식품의 경우는 주원료가 국내산만 사용가능

### 【선정기준(100점기준)】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(30점) | ② 농산물 활용계획(30점) | ③ 보조사업 지원여부(20점)    |
| ④ 기업운영기간(10점)           | ⑤ 기업매출 규모(10점)  | ※ 총 평점 60점 이상 기업 선정 |

- 1순위) 전주산 농산물 활용 비중 높은 가공 상품화 계획
- 2순위) 기 유사(동일)사업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
- ※ 우선지원 기준 : 동점 시 위 순위별로 지원

### 【지원 제한대상】

- 유사(동일)사업으로 중복 신청 또는 지원(예정)중인 기업
- 본 사업 완료 후 3년 미경과자
- 최근 3년이내('22~'24년) 관련사업\*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
- \* 관련사업 :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, 전주시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
- 최근 5년이내('20~'24년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을 위반한 기업
- 국세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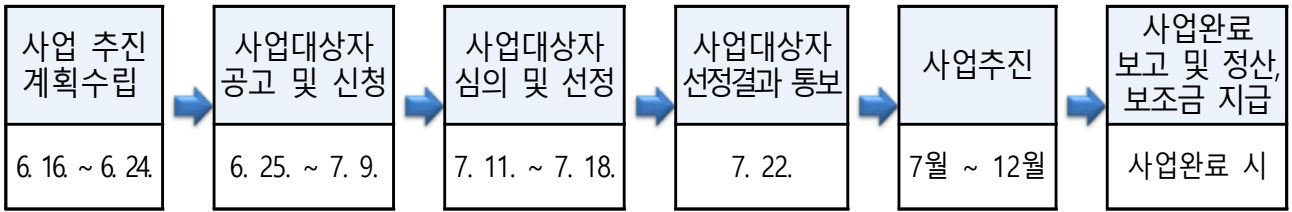
## 5. 신청방법

- 공고기간 : 2025. 6. 25.(수) ~ 7. 9.(수)
- 접수기간 : 2025. 6. 25.(수) ~ 7. 9.(수) 18시까지
- 접수방법 :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
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(063-281-6738)
  -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, 대우빌딩 6층
  - 담당자 이메일 : agrikhe0@korea.kr **※ 이메일 접수 제출시 확인 전화 필수**
- 신청서류 : 신청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제출

| 연번 | 구 비 서 류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 | 사업 신청서(직인 날인)                | 서식 제1호 |
| 2  |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 제2호 |
| 3  | 지역농산물 활용 및 조달계획서             | 서식 제3호 |
| 4  | 보조사업 이력서                     | 서식 제4호 |
| 5  | 보조사업 성실이행 협약서                | 서식 제5호 |
| 6  | 청렴이행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 제6호 |
| 7  |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                 | 서식 제7호 |
| 8  |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| 해당 시   |
| 9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|
| 10 |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            | 필수     |
| 11 |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 '23~' 24년/국세청) | 필수     |
| 12 |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           | 필수     |

## 6. 사업추진 일정

\*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



### 1) 사업신청단계

**시**

- 「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」 지침 수립 및 사업공모

**보 조 사 업 자**

- 신청서류\*를 첨부하여 사업신청
  - (신청서류)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자료 참조
  - 농식품산업과 사전문의(지원 가능여부 등) 후 신청서 제출

### 2) 사업선정단계

**시**

-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심의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

< 1단계 : 서류평가 > \*심사평가표 준하여 평가

- 사업내용 누락여부, 사업대상자의 적정성,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,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여건 검토
  - 서류평가 결과 자격요건 충족 시 심의평가 대상으로 선정

< 2단계 : 심의평가 >

-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 심의 위원회 평가
  - 사업의 필요성,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등

### 3) 세부추진단계

#### 시

-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(시 → 보조사업자)
-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안내

#### 보조사업자

- 공모선정 시 제출한 사업목적·계획에 부합하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
  -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) 첨부
  -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권고
-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
 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

### 4) 시행단계

#### 시

- 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안내
  - 시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
  -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
-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(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)
- 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며,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

#### 보조사업자

-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본 지침,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 추진
-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변경 불가

## 5) 자금집행단계

### 보 조 사 업 자

- 우선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,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(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)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신청

### 시

-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확인 한 후에 보조금 집행

## 6) 사후관리

### 시

-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은 부당한 사항을 알았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

## 7. 유의사항
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-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(VAT)미포함 금액※**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**이며,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사업완료 시 포장 및 패키지 샘플 제작 후 제출 필수

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사업 심사평가표(안)

| 심사평가배점표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평가항목  | 세부평가항목   | 배점  | 점수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 ① 사업계획<br>(타당성, 자급가능성, 구체성 등)<br>사업효과, 적합성<br>(30점) | ① 우수<br>② 보통<br>③ 다소 미흡  | 30<br>20<br>10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② 농산물 활용 계획<br>(30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농산물을 간편 제품화>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| ① 전주산 100%이상<br>② 도내산(국내산 포함)<br>70%이상 ~100%미만<br>③ 도내산(국내산 포함)<br>70%미만<br>④ 수입산 50%이상  | <농산물 가공 후 간편 제품화><br>① 전주산·도내산<br>(국내산 포함) 100%이상<br>② 도내산(국내산포함)<br>70%이상 ~100%미만<br>③ 도내산(국내산 포함)<br>70%미만<br>④ 수입산 50%이상 | 30<br>20<br>10<br>5 |    |
| ③ 보조사업 지원 여부<br>(20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기 유사(동일) 지원 실적 없는 기업   | 20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| ② 기 유사(동일) 지원받은 이력 있는 기업   | 10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④ 기업운영실적<br>(10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2년이상~5년미만  | 10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| ② 5년이상~  | 5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⑤ ('23년~'24년) 평균<br>기업매출 규모<br>(10점)                | ① 5억원 이하   | 10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| ② 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   | 5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b>계</b>  |  | <b>100</b>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b>※ 선정제외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사(동일)사업으로 신청 또는 지원(예정)중인 기업</li> <li>○ 본 사업 완료 후 3년 미경과자</li> <li>○ 최근 3년내('22년~'24년)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있는 기업<br/>(관련사업: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, 전주시 지원사업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)</li> <li>○ 최근 5년내('20년~'24년)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기업</li> <li>○ 국세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기업</li> </ul>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b>※ 동점시 우선순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순위) 전주산 농산물 활용 비중 높은 가공 상품화 계획<br>2순위) 기 유사(동일)사업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 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
**※ 총 평점 60점이상 기업 선정**



#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사업계획서

### I. 사업체 현황

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
| 업 체 명<br>(대표자) | (            )  | 사 업 자<br>등록번호 |   |
| 사업체 구분         | <i>*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<br/>식품기업(법인), 개인사업자 등</i>          | 법 인<br>등록번호   |   |
| 사업장 주소         |   | 연 락 처         |   |
| 업 종            | <i>*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</i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생산품목        |   |
| 세금채납<br>여 부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체납 | 금융기관<br>연체여부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체 |

### II. 사업추진계획

○ 신청 내용 (*구체적 자율작성*)

- 지역농산물\*을 주원료로 하는 간편식품 제작 및 공급

○ 사업계획서 (*구체적 자율작성*)

사업목적 및 필요성

추진방법

판매전략 및 목표

사업 지속 가능성

- 지속적인 생산, 판매까지 가능한 구조기술(생산,판로 등)

기대효과

### Ⅲ. 사업비 산출내역

| 세부사업내역 | 사업량 | 단위 | 사업비(단위 : 천원) |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
|        |     |    | 계            | 시비 |    |
| 계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
|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

※ 비교 견적서 제출



**첨 부**

**업체 사업장 기본 자료**

| 사업장 외부 전경 사진 |  |
|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|  |
| 제조업소 내부 사진   |  |
|              |  |
| 주요 생산제품 사진   |  |
|              |  |

## 보조사업 이력서 (최근 5년간)

1. 신청자 인적사항 (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기준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생산자단체 등<br>· 회사·기타명칭       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<br>(등록 년월일) | -    -<br>(    년    월    일) |
| ③ 전화번호    (    )    -    -    - | ④ 대표자(성명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신청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농업보조사업 지원사항( '20~ '24년)

| ⑥ 지원받은<br>년도 | ⑥ 지원받은 사업명 | ⑦ 소재지 | ⑧ 면적<br>(㎡) | ⑨ 총사업비<br>(천원) | ⑩ 보조금<br>(천원)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국비<br>도비<br>시군비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년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 보조사업 성실이행 협약서

## 1. 보조사업자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보조사업자  |  |
| 대표자명   |  |
| 사업장 주소 |  |
| 연락처    |  |

## 2. 지원내용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명  |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|
| 사업비  | 금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내용 | ·<br>·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. 지원조건
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혜자, 시공 및 납품업체 등과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.
-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.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, 증거서류,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, 기기, 장비, 지적재산권 등 일체를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.
- 보조사업자는 전주시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, 양도, 교환, 대여할 수 없다.

-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”, “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”, “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침” 에 의거 하여 적법·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
-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.

보조금을 지원받아 전주시 「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」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,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2025. . .

보조사업자 : 업체명

대표자

(인)

**전주시장** 귀하

#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) >

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39조)

**제37조(벌칙)**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38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**제39조(벌칙)**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**제40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. .

보조사업자 : 업체명

대표자

(인)

## 2025년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며 **친환경 착한소비\***를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**지속가능한 발전**에 이바지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귀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**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협조**할 것을 서약합니다.

\* 환경(E)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(S) 등 ESG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

### 【 녹색제품이란? (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) 】

◆ **제품 제조·소비·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저감되는 제품**

| 구분    | 환경표지 인증   | 저탄소제품   | 우수재활용(GR) 인증  |
|-------|---|---|---|
| 표시    |  |  |  |
| 운영목적  |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(KS 품질 이상 만족)   |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|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  |
| 대상품목  | 사무기기, 가전제품,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 군  | 의료기기, 의약품,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한 모든 제품   | 폐지, 폐고무, 폐플라스틱, 폐목재 등 11개 분야  |
| 인증제품수 | 4,487개 업체 17,859개 제품 ('21.9월말 기준)   | 87개 업체 256개 제품 ('21.9월말 기준)   | 224개 업체 250개 품목 ('21.10월초 기준)   |
| 인증기준  | 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 | 「저탄소제품 기준」고시 참조   | GR제품정보시스템 참조  |
| 인증기관  | 환경부/<br>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| 환경부/<br>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| 국가기술표준원/<br>(사)자원순환산업인증원  |
| 홈페이지  | greenproduct.go.kr  | edp.or.kr   | buygr.or.kr   |

2025. . .

보조사업자 : 업체명

대표자

(인)